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(신동욱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3967

발의연월일: 2024. 9. 12.

발 의 자:신동욱・박준태・박정하

주진우 · 조은희 · 우재준

김소희 · 김도읍 · 박상웅

백종헌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주민, 학생, 직장인 및 노인의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과 조치를 마련하도록 하고 있음.

유아기의 체육활동은 유아의 신체 및 운동기능 발달, 자아개념 및 정서적인 안정감 형성에 긍정적 영향을 끼침. 그런데 미세먼지·황사문제로 실외 체육활동이 제약되고, 도심지 내 유아놀이공간 등 시설도부족한 상황임. 이러한 상황에서 유아들이 건강하게 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체육시설 확충 및 놀이·체육 활동 프로그램 등을 보다 다양하게 개발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함.

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유아 체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유아 건강의 유지 및 증진을 위한 맞춤 체육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 및 시설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

써 유아가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하는 데 필요한 체육활동 관련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(안 제10조의2 및 제13조제3항 신설 등). 법률 제 호

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국민체육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의2의 제목 중 "노인"을 "노인과 유아"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"노인"을 각각 "노인과 유아의"로 한다.

제13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7항(종전의 제6항) 중 "제5항"을 "제6항"으로 한다.

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유아 체육 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적정한 확보와 그 운영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
제10조의2(<u>노인</u> 체육의 진흥) ①	제10조의2(<u>노인과 유아</u> 체육의		
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<u>노인</u>	진흥) ①		
체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	<u>노인과 유아의</u>		
련하여야 한다.			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	② <u>노</u>		
<u>인</u> 건강의 유지 및 증진을 위	인과 유아의		
한 맞춤 체육활동 프로그램을			
운영하거나 그 운영에 필요한			
비용 및 시설을 지원할 수 있			
다.			
제13조(체육시설의 설치 등) ①・	제13조(체육시설의 설치 등) ①・		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		
<u><신 설></u>	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유		
	아 체육 활동에 필요한 시설의		
	적정한 확보와 그 운영에 필요		
	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		
<u>③</u> ~ <u>⑤</u> (생 략)	$\underline{4} \sim \underline{6}$ (현행 제3항부터 제5		
	항까지와 같음)		
<u>⑥</u> 제1항부터 <u>제5항</u> 까지에 따	<u>⑦</u> <u>제6항</u>		
른 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 등			
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			
정한다.			